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20가합52046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1. 9. 16 선고 2021나201700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20가합520463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전영하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화

담당변호사 이상희

변론종결 2021. 4. 13.

판결선고 2021. 4. 29.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9. 11. 13. 체결된 채권양수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9. 11. 13. 체결된 채권양수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근보증한도액인 2,02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356,110,902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8. 30. 지급명령(독촉절차비용 247,300원 포함)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23842호), 위 지급명령은 2015. 9. 15.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만 한다).

나. C은 2018. 5. 29. D로부터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 를 2018. 7. 17.부터 2020. 7. 16.까지 보증금 3억 5,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만 한다), 2018. 7. 17.까지 D에게 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고만 한다).

다. C 소유의 주택(성남시 중원구 G, 지하층H호, 이하 ‘성남시 주택’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9. 10. 28.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개시결정이 2019. 11. 5. C에게 송달되었다.

라. C은 2019. 11. 13.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만 한다), 같은 날 D에게 그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위 통지는 그 무렵 D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9. 11.

4. 인용결정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타채13258), 그 결정은 2019. 12. 18. D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D는 2019. 12. 24.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 통지서를 받은 바 있다’는 제3채무자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호증, 을 제2,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요건사실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확정에 따른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이 사건 채권양도일인 2019. 11. 13. 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채권양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한참 후에, 다만 C의 주택 임대차를 위하여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대여해 주었다가 그 대여금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로서 그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피고로서 그 보증금 반환채권도 원래 피고의 권리인데다가, 이 사건 채권양도에 의하여 C의 대여금 채무도 같은 액수만큼 감소하였으므로 C의 총 책임재산에는 변동이 없다. 나아가 원고의 채권 성립 당시에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원고를 위한 공동담보로 제공되지도 않았다. 이 사건 채권양도를 C의 기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가지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채무자와 수익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7818 판결 등 참조).

나) C의 채무 초과 상태

이 사건 채권양도일인 2019. 11. 13. 당시 C은 다음과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채무 초과 상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재산의 표시	가액(원)	증거의 요지
성남시 주택	131,000,000	갑3-5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350,000,000	갑5-3, 을2
적극재산 합계	481,000,000	

재산의 표시	가액(원)	증거의 요지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 채무	-356,358,292	갑2-2
성남시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I, J을 합하여)	-10,000,000	갑3-6, 3-7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반환 채무	-425,000,000	을1-1~5
소극재산 합계	-791,358,292	
재산 합계	-310,358,292	

다) 이 사건 채권양도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1) 을 제1,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C의 K조합 계좌로 2018. 5. 29. 3,200만 원, 2018. 7. 17. 3억 1,5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② C은 위 K조합 계좌에서 D의 계좌로 2018. 5. 29. 3,200만 원, 2018. 7. 17. 3억 1,5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 중 대부분은 피고가 C에게 송금해 준 돈으로 보이기는 한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기초 사실 및 갑 제5호증, 을 제2, 3,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C이고 D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을 구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도 C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C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C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피고는 D에게 직접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C의 K조합 계좌로 해당 금액을 송금하였다. C은 2018. 5. 29. 피고로부터 3,200만 원을 송금받으면서 ‘본인(= C)은 피고한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차용하는 총 3억 5,000만 원 중에서 먼저 3,200만 원을 송금받았음을 확인함’ 이라는 차용금 영수증(을 제3호증)을 작성하여 주고 같은 날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③ C은 2019. 11. 13. D에게 ‘발신인(= C)이 D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다' 고 통지하였다.

④ D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의 제3채무자 진술서에 'C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고 기재하였다(갑 제5호증의 1 내지 3).

(3) 위 인정 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양도는 C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다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아야 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대부분은 피고가 C에게 송금해 준 돈이라는 것이다. 피고는 2018. 5~7.경 송금 당시 이미 C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자력으로 조달하지 못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송금 당시 C에게 담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나) 피고가 C에게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송금한 2018. 5~7.경과 이 사건 채권양도일인 2019. 11. 13. 사이에는 약 1년 4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 위 송금행위와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나의 행위라거나 단기간 내에 단일한 경제적 목적에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 평가하여 이를 두고 C의 책임재산에 증감이 없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 C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로는 성남시 주택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있었고, 그중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350,000,000\text{원}/481,000,000\text{원} = 72.7\%$). 그런데 원고가 성남시 주택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9. 10. 28.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고 그 개시결정이 2019. 11. 5. C에게 송달되자, 일주일 후인 2019. 11. 13.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위와 같은 경과에 비추어 보면, C은 책임재산에 대한 원고의 강제집행이 이루어지자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우선 회수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라) 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채권양도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특히 성남시 주택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된 2019. 11. 5.로부터 일주일 후인 2019. 11. 13.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도 2019. 11. 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다는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넉넉히 추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C의 채무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위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제3채무자인 D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이기선, 판사 박수진, 판사 현재언

별지

- 청구금액: 350,000,000원
- 소외 C이 소외 D와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D에게 지급하고, 임대차계약만료,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 임대차계약 종료 시에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 350,000,000원의 반환청구권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돈. 끝.